

## 27.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19년 9월 6일
- 발 의 자 : 전경원 의원, 강민구 의원, 강성환 의원, 김대현 의원  
김태원 의원, 박갑상 의원, 운영애 의원, 정천락 의원  
하병문 의원
- 회부일자 : 2019년 9월 9일
- 상정일자 :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교육위원회(2019년 9월 20일),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전경원 의원)

#### □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#### □ 주요내용

-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-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- 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)

### 3. 검토보고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-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개발 및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정책연구용역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,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과 활용도 확대를 위한 것으로,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주요 내용으로는
  - ▶ 안 제3조에서, 적용할 정책연구용역의 범위를 규정함
  - ▶ 안 제4조부터 안 10조까지, 정책연구용역에 관해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”의 설치와 기능을 정하고, 위원 구성,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  - ▶ 안 제12조에서,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별 담당관을 두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도록 규정함
  - ▶ 안 제14조에서,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
  - ▶ 안 제15조에서, 교육감은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

## ○ 검토 결과

- ▶ 본 제정 조례안은,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‘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’(2018. 10.)을 반영하고, 「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, 2018.11.27.)의 내용을 준용하여,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·타당성 등 사전심사에서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향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- ▶ 특히,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,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유사·중복 연구 방지 등을 통해 정책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### <최근 4년간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>

(단위 : 천원, 건)

구 분		2016	2017	2018	2019
유형	본청	8	2	14	12
	지원청	0	1	1	0
	직속	1	1	3	6
소 계		9	4	18	18
실 적	집행	393,003	154,750	60,4316	307,125
	건수	9	4	18	18
평균 단가		43,667	38,687	33,573	38,390
평균 연구기간		7.5개월	9.5개월	6.0개월	6.1개월

▶ 다만, 정책용역 결과물의 정보 공개 시점에 따라 정책·사업 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공개 시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되며,

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## 5. 토론요지

○ 없음

## 6. 수정안요지

○ 없음

## 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